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실효적 해결방안

Effective solution to franchise transactional dispute

김 상 식* · 김 유 정**
Kim, Sang-Sik · Kim, Yu-Jung

목 차

- I. 서론
- II.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처리현황
- III.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조정에 의한 해결
- IV.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방안
- V. 결론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2002년 5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를 도입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가맹사업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정에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만을 인

논문접수일 : 2015. 06. 29.

심사완료일 : 2015. 07. 22.

게재확정일 : 2015. 07. 23.

* 법무사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주저자)

** 변호사 · 호남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정하고 있어서 조정성립 후에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자는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우선 피하기 위하여 조정을 수락해 놓고 시간은 버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 논문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 대부분이며,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고, 영세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비하여 정보획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성질상 소비자분쟁과 거의 유사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협의회 조정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협의회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정절차의 공정성, 신중성 등을 확보해야 하고, 협의회 명칭도 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가맹사업거래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두도록 함으로써 분쟁발생시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 가맹사업, 가맹사업법,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조정, 중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1. 서론

가맹사업(Franchise)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¹⁾ 이러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표지(브랜드)와 노하우를 이용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사업지식이 없는 사람도 창

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창업 형태이고, 가맹본부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가맹희망자들의 자본을 통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사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등록된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는 190,730개로 2008년의 107,354개와 비교하여 77.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²⁾ 이는 2007년 IMF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등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가맹사업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³⁾

우리나라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 5.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 후 동법은 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특히 2007. 8. 3. 제4차 개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 등이 도입되었고, 2008. 11.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주요내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⁴⁾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 가맹사업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의 요구, 잦은 매장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013. 8. 13. 가맹사업법의 제9차 개정을 통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의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구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도소매업) 표준계약서」 제2조 제1호.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가맹사업거래 통계자료」, 2014.

3) 류석희·소재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3.3, 365-366면.

4) <http://franchise.ftc.go.kr>, 2013년 이 사이트에 방문자한 자의 수는 666,886명이다.

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2014. 2. 14.부터 시행(영업지역 보호제도 강화조항은 2014. 8. 14.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2008. 5. 이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업무⁵⁾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가맹희망자 피해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회 조정의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가맹본부)이 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현황, 그리고 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조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맹사업법상의 여러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⁶⁾ 본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의 연구논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II.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처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처리실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5) 이 업무는 2012. 2. 17. 가맹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다.

6)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것으로, 소재선·류석희, “개정 가맹법상 허위·과장된 정보제공규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4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5; 동,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1; 동, “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주요규정 고찰”, 「경희법학」 제49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6; 이혁,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4.12; 이충은, “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2014. 등이 있다.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밖에 위반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그리고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표 1〉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연도별 처리현황

연도별	시정명령	경고	계	비고
2003	0	1	1	
2004	2	7	9	
2005	5	29	34	
2006	14	16	30	
2007	7	39	46	
2008	11	84	95	
2009	28	338	366	
2010	23	142	165	
2011	49	61	110	
2012	48	52	10	
2013	54	19	73	
계	241	788	1,02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판 공정거래백서」, 2014.8, 496면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2013년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현황은 시정명령 241건, 경고 788건 등 총 1,029건이다. 시정명령은 2013년이 54건으로 가장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주)파리크라상의 부당한 점포환경 강요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⁷⁾ (주)신촌푸드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사례⁸⁾ 등을 들 수 있다.

7)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19호 2013. 6. 26., 사건번호 013가맹0611, 사건명: (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 점포 이전·확장을 실시함에 있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24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인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42건으로 가장 많고,⁹⁾ 동법 제9조 제1항 위반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동법 제11조 제1항 위반인 가맹계약서 미교부가 각각 9건, 동법 제12조 제1항 위반인 불공정거래행위가 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2013년의 위반유형별 사건처리현황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 서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가맹계약 서미교부	불공정 거래행위	합계
2	42	9	3	9	8	73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5월 이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를 시행하고 있고, 2012. 2.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에는 이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서가 도입된 2008년에 비하여 2013년의 가맹본부 수는 194.6%,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189.3% 증가하였으며, 2013년 말 현재 전체 가맹본부 수는 2,973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3,691개에 이르고 있다.¹⁰⁾

8)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43호 2013. 7. 22., 사건번호 2012가유3287, 사건명: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예상 월 매출액, 예상 월 순이익 등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적인 근거 없이 실제 매출액 등보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신촌푸드를 고발한다.

9) 아직까지 정보제공 미제공 행위가 가장 많은 것은 가맹본부의 상대적인 영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 2,973개 중 가맹점 수가 0개인 가맹본부는 32.9%인 979개, 가맹점 수가 0-4개인 가맹본부는 50.8%인 1,512개에 이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14년판 공정거래백서」, 2014.8, 496면).

10)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8.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서 내용 중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계백서, 498면).

〈표 3〉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맹본부	1,009	1,505	2,042	2,405	2,678	2,973
영업표지	1,276	1,901	2,550	2,947	3,311	3,691
가맹접수	107,354	132,443	148,719	170,926	176,788	190,730
직영접수	6,087	7,695	9,477	10,155	11,326	12,61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III.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조정에 의한 해결

1.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가맹사업거래 분쟁사건은 가맹사업의 성격이 민사적 요소가 강하고 계속적 거래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통상은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신청서¹¹⁾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협의회에 조정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그리

11) 분쟁조정신청서에는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하고, ①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고 ① 조정거부 또는 중지사유가 있으면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¹²⁾ ② (a)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b)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c)조정이 중지된 경우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¹³⁾

〈그림 1〉 분쟁조정 절차도



12) 협의회는 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③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제2항).

13) 협의회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¹⁴⁾ 즉, 조정절차에서 협의회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심사를 하고 정식사건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¹⁵⁾

2. 조정신청 및 조정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있는 협의회는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협의회가 설치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조정신청은 총 4,061건(연평균 369건 정도)이고, 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것은 2,950건인데, 2,135건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성립률은 73%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신청 607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것은 426건인데, 이 중 조정성립이 381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9%를 보이고 있다.

〈표 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현황¹⁶⁾

연도	신청	조정완료			기각	절차중단
		성립	불성립	계		
2003	186	110	59	169	17	0
2004	222	132	64	196	26	0
2005	269	62	111	173	94	2
2006	187	74	72	146	40	1

14)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3조 제6항).

15)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가맹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하도급, 유통, 약관 관련분쟁 등 5개 분야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공정경제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16) 공정거래위원회, 전계 백서, 499면.

2007	188	68	77	145	42	1
2008	302	154	81	235	26	41
2009	367	201	51	252	34	81
2010	414	170	67	237	28	149
2011	710	459	106	565	14	131
2012	609	324	82	406	17	186
2013	607	381	45	426	51	130
계	4,061	2,135	815	2,950	389	722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판 공정거래백서」, 2014.8, 499면.

※ 절차중단은 소제기, 신고취하, 가맹본부의 소재불명 및 폐업.

조정이 성립된 경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 청구권이 990건(46.4%)으로 가장 많은데,¹⁷⁾ 이는 주로 계약체결단계에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17) 예컨대, 피부관리실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을 들 수 있다. 가맹계약자인 A는 피부관리실 가맹본부인 B와 2014.6.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1천2백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계약체결과정에서 B는 계약체결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에 수령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후 A는 계약체결일 일주일 만에 B에게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B는 당시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B의 행위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A가 가맹점 개설을 위한 기초공사 등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여 “B가 A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들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보도자료, 2015.2.3., 8면).

18) 2011년 6월 경 甲은 편의점 가맹본부인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로부터 월평균 매출액 3,600만원을 예상하는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이 1,577만원으로서 乙이 제시한 예상 월매출액의 약 42%에 그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고, 협의회는 乙이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여 甲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잔여계약분 225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225만원, 조정신청일 현재까지의 상품보증금 납부액 400만원,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로 인한 손해 270만원등 총 1,12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들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13.3, 8면).

〈표 5〉 유형별 조정현황¹⁹⁾

유형별	계	조정결과		이유 없음	절차 중단
		성립	불성립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1,920	990	461	142	327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192	70	40	66	16
부당한 갹신거절의 철회	241	113	56	44	28
계약이행의 청구	214	106	56	21	31
부당이득반환	157	76	35	20	26
영업지역의 보장	153	95	19	18	21
상표 및 의장권 침해	5	4	1	0	0
기타	1,179	681	147	78	273
계	4,061	2,135	815	389	722

Ⅳ.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방안

1. 조정의 효력

가. 조정의 일반적 효력

민사소송법은 제220조에서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조서에 적은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²⁰⁾ 민사조정법은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민사조정조서, 가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19) 공정거래위원회, 전계백서, 500면.

20) 또한 민사소송법은 제46조에서 제22조의 조서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11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절차에 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는 하다(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7, 645면,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716-719면 등 참조)

더욱이 이러한 규정은 각종 행정위원회의 조정에도 파급되어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ADR)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각종 행정위원회, 즉 행정형 ADR기관²¹⁾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전자의 예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조정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의 측면이 더 강조된다. 따라서 법원조정을 제외한 행정형 조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정의 효력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정의 본질에도 어울리지 않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입법론적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한 국가배상법 제1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²²⁾ 그래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 1999. 4. 15.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2006. 3. 3.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8. 3. 21.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각각 민법상 화해와

21) ADR을 분류할 때,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ADR기관의 설치자·운영자가 법원인 경우를 사법형ADR, 행정기관인 경우를 행정형ADR, 민간인인 경우를 민간형ADR이라고 한다(김상찬, 「ADR」, 도서출판 은누리, 2012, 1824면; 동,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방안”, 「법학연구」 46집, 한국법학회, 2012.5, 218-220면).

22) 헌법재판소 전원합의회 1995. 5. 25. 결정 91헌가7.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던 것을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다.²³⁾

나. 협의회 조정의 효력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24조). 조정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3조 제2항). 말하자면 협의회를 통한 가맹사업관련 분쟁에 관한 조정에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협의회 조정의 효력 강화 필요성

협의회를 통한 가맹사업관련 분쟁에 관한 조정에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성립 후에 당사자(대부분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대부분 가맹사업자)는 다시 또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조정의 효력이 강제성이 없게 되면 가맹본부의 의무이행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수단인 가맹사업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 취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실제로 가맹본부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당장 피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조정을 수락해 놓고 시간은 버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대부분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에 관한 것으로 1,000만원 미만의 조정신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이기 때문

23) 생각건대, 행정형 조정기관들의 조정의 효력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위원회의 위상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81면).

에 정식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1.4%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²⁴⁾ 조정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맹거래 관련 분쟁은 그 성질상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세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으로서 정보획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²⁵⁾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분쟁과 거의 유사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분쟁과 협의회 조정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⁶⁾

3. 협의회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가. 협의회 조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협회의 조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시 조정조서의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맹사업법 제24조를 개정해야 한다. 동법 제24조 제1항은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개정하면 될 것이다.²⁷⁾

24) 공정거래위원회, 전계백서, 500면.

25) 공정거래위원회의 2001.4. 조사에 의하면,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가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①가맹본부 제공, ②박람회, ③신문, 인터넷, TV, ④주변사람, ⑤기타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맹사업자는 주로 주변사람을 통하여(56.4%), 가맹희망자는 신문, 인터넷, TV를 통하여(54.5%)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1.4).

26) 실제로 2013. 4. 2.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의원,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가맹사업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만, 지금까지 행정형 조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성립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로 간주되는 것은 행정부가 한 일이 법원이 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행정부가 법원이 할 수 있는 판결을 한 결과가 되어 문제”²⁸⁾라고 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²⁹⁾ 그리고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재판상화해로 간주하는 국가배상법 제16조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³⁰⁾ 취지를 존중하여,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정기구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준수법기구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조정에 적용되는 절차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거의 사법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³¹⁾

그러므로 협의회 조정의 효력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정기관인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 절차의 공정성, 신중성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협의회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분쟁당사자들이 조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정기관의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행정형 ADR기관의 조정위원들은 행정부처의 주도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정부의 전·현직공무원의 상당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33조(조정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8)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20면.

29) 예컨대, 김용진, “민사분쟁조정법규의 개선방안”, 「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10, 309면 등.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55. 5. 25, 91헌가7.

31) 손경환, “전자거래분쟁의 해결”, 오사카대학 박사학위논문, 2001, 191면; 황해봉, “행정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6, 79면.

협의회 위원의 경우, 9인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게 되는데(동법 제19조 제2항),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추천한 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동조 제3항),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①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② 판사·검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동법 제17조 제3항)”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³²⁾

그러나 협의회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려면 협의회 조정의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점을 고려한다면 협의회 위원의 위촉에는 공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협의회 위원으로 고위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전공의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협의회 위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으나, 외부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모든 분쟁조정업무를 총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³³⁾ 그러므로 협의회 위원의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상

32) 가맹사업법에서는, 조정원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중법 제17조 제3항)

33)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4, 91면.

임으로 할 필요가 있다.³⁴⁾ 그리고 ‘협의회’라는 명칭도 문제가 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회는 협의하기 위한 단체라는 어감이 들어서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재에 의한 해결의 적극적 활용

중재란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사인인 제3자에게 의뢰하고 당사자 간에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이다.³⁵⁾ 말하자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자주적 절차를 말한다.³⁶⁾ 이러한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에 중재조항을 넣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하면 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조정보다 강력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³⁷⁾

일반적으로 국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계약서 중에 중재조항을 두거나, 계약서에서 중재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

3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인(지방은 1인)을 상임으로 하고 있다.

35)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8면; Black, LAW DICTIONARY 5th Ed., 1979, p.96

36) 김상찬, 전계서, 191면.

37) 조태현, “가맹사업거래 계약과 분쟁해결”,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183면; 윤선희, “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중재조항”, 「중재연구」 제13권, 한국중재학회, 2004.2, 342면 등.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맹사업 관련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중재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국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 23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여, 가맹계약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³⁸⁾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가맹사업 조정, 중재 사례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³⁹⁾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중재로 해결하려면 분쟁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필요하며, 중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처럼 언제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조항을 두도록 가맹사업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맹사업법 제4장(분쟁의 조정 등)’을 대폭 개정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중재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정과 더불어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협의회에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이나 조직체계의 한계가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활용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재를 통한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두도록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38)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9) 예컨대, 2012.4.3.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주최로, 프랜차이즈 관련 기업 및 가맹점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가맹사업 조정, 중재 사례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www.kcab.or.kr).

V. 결론

가맹사업법은 2002년에 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2007년 개정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를 도입하였고, 2008년부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서의 주요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013년 8월 개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상당부분 예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은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스스로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고 창업준비 단계부터 권리를 지켜나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하여 계속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관련 제도를 숙지시켜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 등 엄정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집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맹사업 당사자 간에 계약자유 원칙이 퇴색될 만큼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다.⁴⁰⁾

그러므로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은 '협의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밖에 없는 협의회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여

40) 특히, 동법 제44조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검찰총장,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 등의 고발 요청 등의 규정은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법제처, “가맹사업법제·개정 문”, 1-2면; 소재선·류석희, 전제 “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주요규정 고찰”, 48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정절차의 공정성, 신중성 등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에 대하여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함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두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판 공정거래백서」, 2014.8.
김상찬, 「ADR」, 도서출판 온누리, 2012.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7.
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가맹사업거래 통계자료」, 2014.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46집, 한국법학회, 2012.5.
김용진, “민사분쟁 조정법규의 개선방안”, 「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10.
류석희·소재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3.3.
소재선·류석희,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1.

- 소재선·류석희, “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주요규정 고찰”, 『경희법학』 제49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6.
- 소재선·류석희, “개정 가맹법상 허위·과장된 정보제공규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4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5.
- 손경한, “전자거래분쟁의 해결”, 오사카대학 박사학위논문, 2001.
- 윤선희, “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중재조항”, 『중재연구』 제13권, 한국중재학회, 2004.2.
- 이 혁,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4.12.
- 이충은, “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2.
- 조태현, “가맹사업거래 계약과 분쟁해결”,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 황해봉, “행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6.

[Abstract]

Effective solution to franchise transactional dispute

Kim, Sang-Sik

Ph.D. Course, Jeju National University

Kim, Yu-Jung

Lawyer · Assistant Professor, Honam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was established in May 2002. The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o adop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registration system, franchise deposit scheme, etc. with a view to fair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But as the franchise business market has grown rapidly, franchisee damages have also expanded by unfair activities abusing favorable transactional position of franchiser and so forth, increasing franchise business-related disputes each year.

In the country, disputes related to franchise business are to be mediated by the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Dispute Settlement Council. The legal effect of its mediation is no more than the contract of compromise under the civil code. Thus, if the franchiser does not follow the mediated resolution on the voluntary basis, the franchisee should file a suit to court again. In this situation, sometimes franchisers, to avoid the corrective measures or recommendations of Fair Trade Commission even temporarily, accept the Council mediation result and gain some more time.

In this study, it was noted that such franchise business-related disputes are mostly small-scale cases for less than KRW 10 million and hardly led to a full formal trial. In most of the cases, franchisees are micro-scale owners and in unfavorable position to access information and many others compared to franchisers. Given this aspect, franchise business-related disputes, in its nature, are almost similar to customer disputes. Therefore, it is emphasized in this study that, as the medication by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uncil is recognized as equally effective as judicial settlement, the Council mediation should be made equally effective to judicial settlement to better protect the franchisees. To this end, the Franchise Business Act needs to be amended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Council organization, mediation procedural fairness and prudence and others. It is also desirable to change the Council name into settlement committee. In the franchise contracts between a franchiser and franchisee, mediation provisions need to be inserted therein so that disputes can be resolved through mediation.

Key words : franchise, franchise business act, franchiser, franchisee, settlement, mediation, Fair Trade Commission,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Dispute Settlement Council